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3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박해철 · 김남희 · 박 정
송옥주 · 이연희 · 박균택
한민수 · 전현희 · 김정호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

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5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 ② (생 략)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 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록하여 보존 <u>하여야</u>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u> -----.
④ (생 략)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1조(벌칙) ----- ----- -----.
1. <u>제69조제1항 · 제2항, 제89조 제1항, 제90조제2항 · 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제2항을 위반한 자</u>	1. <u>제36조제1항 · 제2항, 제69조 제1항</u>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u> <u>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u> <u>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관</u> <u>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u> <u>출하지 아니한 자</u>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